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60호로 2024년 5월 31일 차인영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 하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보호기간의 연장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 제8조)

마. 자립지원센터 등 및 협의회(안 제9조 ~ 제10조)

바.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2024. 6. 3.~ 6. 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 하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제명이 조례 내용을 대표할 수 있게 개정하였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보건복지부·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면서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참고하여 각

대상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목표 및 방향, 시책개발,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지원사업)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8조(실태조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검토결과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은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과 비교하여 가족의 지원이 부족하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1년3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 2020년 7명, 2021년 2명, 2022년 7명, 2023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지원사업으로는 생활

안정·심리정서·일자리 지원 등이 있으나, 우리 구 자체사업은 없이 국·시비 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자립지원사업 현황					
연번	구분	지원내용	지원액 (천원)	재원	
1	생활안정 지원	자립 정착금	- 보호종료 시 2,000만원 (1,000만원씩 2년에 걸쳐 분할 지급)	40,000	시100
		자립수당	- 매월 50만원 (5년간)	197,000	국50 시50
		대중교통비	- 매월 6만원 (5년간)	15,900	시100
		임대료 등	- 월 임대료(실비) 지원 - 주거환경조성비 : 1회 50만원	-	시100
2	심리정서 지원	멘토-멘티 결연	- 멘토링 활동비 : 30만원 (연3회) - 멘토 격려금 : 10만원 (연3회) - 활동 격려금 : 10만원	400	시100
		동아리 지원	- 활동비 : 최대 100만원 (연2회) - 활동격려금 : 최대 30만원	500	
		심리상담 서비스	- 종합심리검사비 : 최대 45만원 - 심리치료비 : 최대 15만원	1,850	
		자립캠프 운영	- 팀당 최대 3백만원 내	5,130	
3	일자리 지원	학업유지비	- 1인 100만원 (연2회)	-	시100
		취업준비금	- 1인 60만원 이내 (연2회)	-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문 신설, 자립준비청년 등의 상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의 실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9. 삭제 <2016. 3. 22.>
-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

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 6. 21.]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8.(생략)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